

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2. 11. 28.(월)

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경상북도교육감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급중지 사유 변경 및 일부 삭제(안 제7조제1항)
- 나. 위원의 수 변경(안 제9조제2항)
- 다.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9조제3항)
- 라.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(안 제9조제9항)
- 마. 조문 정비(안 제10조제5항)
- 바. 장학생 명부 작성·비치 규정 변경(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교육기본법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의견 반영(교육청 행정과)
- 규제심사: 해당없음(교육청 중등교육과)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교육청 감사관)
-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(학생생활과)
- 해당부서의견 : 의견없음(중등교육과)
-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

4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안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7조(지급중지) 사유를 “퇴학” 에서 “퇴학 또는 자퇴” 로 변경하여 지급중지 대상을 확대함
- 안 제9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을 심사하는 “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”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, 부위원장을 중

등교육과장으로, 위원수를 11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고
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종합의견

-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발과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특별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